

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826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6월 27일

제안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근거조항 오류를 정정하고,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문의 근거조항 수정 및 용어 정비(안 제5조제5항).
-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 수정(안 제8조제1항).

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5항 중 “제5조제3항”을 “제5조제4항”으로, “없는 한”을 “없으면”으로 한다.

안 제8조제1항 중 “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”을 “관련 프로그램”으로, “연계하여야 한다”를 “연계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〈 수정안 조문대비표 〉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(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</p> <p>2.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·치료·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</p> <p><신설></p>	<p>제5조(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학교폭력 예방대책(이하 “예방대책”이라 한다) --- 사항(이 경우 예방대책에 교육감이 수립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)</p> <p>2.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</p> <p>3. 법 제10조제5항에 따</p>	<p>제5조(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) ①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3. (개정안과 같음)</p>

간)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회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8조(청소년시설 등 연계 지원) ①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단체의 장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관련 청소년시설 등으로 연계할 수 있다.

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)으로 하며, 두 차례 ---. ---

----- 전임위원의 -
-----.

제8조(청소년시설 등 연계 지원) ①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른 ---

-----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-----
--- 연계하여야 한다.

제8조(청소년시설 등 연계 지원) ① -----

----- 관련 프로그램-----
--- 연계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관한 필요한”
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(목적)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뜻한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「초·중
등교육법」 제2조”를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
“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”를 “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
한 법률」 제12조”로, “단체 또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”를 “단체 또는
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「학교 밖 청소년
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”를 “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
조제3호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 중 “시행계획”을 “학교폭력 예방대책(이하 “예방대책”이라 한다)”
으로, “사항”을 “사항(이 경우 예방대책에 교육감이 수립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
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

제5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상담·치료·교육 기관에 관한 사항

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지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5조제3항”을 “제5조제4항”으로, “협조할 수 있다”를 “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이내”를 “이내의 위원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(당연직은 재임기간)으로 하며,”를 “(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)으로 하며, 두 차례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전임 위원회”를 “전임위원의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”을 “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1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u>제1조</u> 이 조례는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<u>필요한</u>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, 가해학생의 선도·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"학교"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<u>제2조</u>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.</p> <p>3. ~ 5. (생략)</p> <p>6. "청소년시설 등"이란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<u>제12조</u>에 따라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<u>제29조</u>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.</p> <p>7. "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</p>	<p><u>제1조(목적)</u> ----- ----- ----- <u>필요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뜻은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「초·중등교육법」 <u>제2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<u>제12조</u>----- ----- 단체 또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<u>제29조</u>----- -----.</p> <p>7. -----</p>

"이란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.

제5조(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) ① (생략)

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2.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·치료·교육 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

<신설>

3. (생략)

<신설>

---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-----
-----.

제5조(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.

1. -----
----- 학교폭력 예방대책(이하 “예방대책”이라 한다) --- 사항(이 경우 예방대책에 교육감이 수립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)

2.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

3.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상담·치료·교육 기관에 관한 사항

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③ 지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

③ (생략)

④ 교육감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지역위원회의 제5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할 수 있다.

제6조(지역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.

②·③ (생략)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(당연직은 재임기간)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회 남은 임기로 한다.

⑤ (생략)

제8조(청소년시설 등 연계 지원) ①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단체의 장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프로그램을 안내

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⑤ -----
----- 제5조제4항 -----

-----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역위원회의 구성 등) ① --

----- 이내의 위원 -----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(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)으로 하며, 두 차례 ---
----- 전임위원의 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청소년시설 등 연계 지원) ①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른 --

하고 관련 청소년시설 등으로 연계할 수 있다.

② 청소년시설 등은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연계된 학생에게 적정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-----.

② ----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 -----
-----.

<삭 제>